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이 건립한 체육시설 증가로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물의 합리적 사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○ “체육시설“ 용어의 정의를 기존 체육시설 뿐 만 아니라 추가로 건립 및 향후 건축 필요 예상되는 시설물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책정하고

○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고,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력증진에 기여

○ “성주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”를 “성주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”로 제명을 띄어 쓰고자함.

4. 관련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조, 제27조

5. 검토의견

□ **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**본 개정 조례안은**

○ 체육시설의 증가로 성주군체육시설의 용어를 정립함으로서 기존의 체육시설물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고

○ 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

○ 또한 **“제명”** 일부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,**

○ **개정 조례안은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